

# 의 결

# 국 민 권 익 위 원 회

## 제 5 소 위 원 회

### 의 결

의안번호 제2022-5소위11-경02호

민원표시 수사 진행상황 미통지 등 이의

신 청 인 권○○

피신청인 ○○경찰서장

의 결 일 2022. 3. 21.

### 주 문

피신청인에게, 신청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적시에 통지하지 않아 「경찰 수사규칙」 제11조를 위반한 경찰관에 대해 교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시정권고 한다.

### 이 유

#### 1. 신청취지

신청인은 2020년 12월경 ○○경찰서에 전○○(이하 ‘피고소인 1’이라 한다)을 공인중개사법 위반, 신○○(이하 ‘피고소인 2’라 한다)을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사기,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으로 고소(이하 ‘이 민원 고소사건’이라 한다)하였다. 이 민원 고소사건을 담당한 순경 서○○(이하 ‘이 민원 경찰관’이라 한다)으로부터 수사 진행상황과

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. 12. 28. 피신청인이 피고소인 2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한 사실과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일이 2021. 8. 10.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.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과 이 민원 고소사건 접수일을 조작한 것에 대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해달라.

## 2. 피신청인의 주장

가. 이 민원 경찰관이 피고소인 1을 기소의견으로 ○○지방검찰청에 송치한 후 2021. 8. 11. 이 민원 고소사건(사건번호 2021-000314)을 종결하고, 2021. 8. 10.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새로 사건을 생성(사건번호 2021-010066, 이하 ‘분리된 고소사건’이라 한다)하여 피고소인 2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,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.

나. 이 민원 경찰관과 신청인 간에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(통화 8회, 문자 연락 18회)과 이 민원 경찰관이 신청인에게 2021. 8. 11.과 2021. 12. 28. 각각 수사 결과통지 하였음을 확인하였고, 이 민원 경찰관은 2020. 5.에 입직한 초임 경찰관임을 고려하여 이 민원 경찰관에 대해 ‘불문’ 처리를 바란다.

## 3. 사실관계

가. 피신청인이 제출한 답변서 및 이 민원 경찰관의 진술서에 따른 이 민원 고소사건의 진행경과는 아래와 같다.

- 2020. 12. 1. : 신청인이 ○○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제출

- 2021. 1. 7. : 피신청인이 이 민원 고소사건(사건번호 2021-000314) 접수
- 2021. 8. 10. : 피고소인 2에 대한 고소내용을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분리하여 분리된 고소사건을 생성(사건번호 2021-010066)
- 2021. 8. 11. : 피고소인 1을 기소의견으로 ○○지방법검찰청에 송치하고 이 민원 고소사건(사건번호 2021-000314) 종결,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
- 2021. 12. 28. : 피고소인 2에 대해 불기소(증거불충분) 결정, 신청인에게 수사결과 통지

나.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 일정 및 수사 진행상황 통지 내역은 아래와 같다.

1) 이 민원 고소사건(사건번호 : 2021-000314)

- 수사 개시일 : 2021. 1. 7.
- 수사 결과보고일 : 2021. 8. 12.

| 구분      | 통지 날짜        | 방법(서면, 문자, 전화, 전자우편) | 비고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수사 개시   | 2021. 1. 25.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경위 김○○ |
| 수사 진행상황 | 2021. 2. 15.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        | 2021. 3. 22.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        | 2021. 4. 1. 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        | 2021. 4. 7. 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        | 2021. 4. 7. 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        | 2021. 5. 16.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        | 2021. 8. 6. 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        | 2021. 8. 11. | 우편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수사 결과   | 2021. 8. 12.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
※ 형사사법정보시스템(KICS) 상 확인되는 통지 내역이며, 그 외 공용 휴대폰으로도 신청인과 연락을 다수 주고받음

2) 분리된 고소사건(사건번호 2021-010066)

- 수사 개시일 : 2021. 8. 10.
- 수사 결과보고일 : 2021. 12. 28.

| 구분      | 통지 날짜         | 방법(서면, 문자, 전화, 전자우편) | 비고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수사 개시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| -      |
| 수사 진행상황 | 2021. 9. 24.  | 문자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수사 결과   | 2021. 12. 28. | 우편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|         | 2022. 2. 9.   | 우편                   | 순경 서○○ |

다. 피신청인이 제출한 수사결과 통지서를 확인한 결과, 피신청인은 2021. 12. 28. 신청인에게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(수사결과 통지서 작성일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기재된다)되고, 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컴퓨터 화면 기록에는 “등기 전송일시 2021. 12. 28. 15:54:18, 우편제작일 2021. 12. 29., 문서명 수사결과 통지서, 수신자 권○○ (신청인)” 라고 되어 있다.

라. 피신청인이 제출한 이 민원 경찰관의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- 1) 신청인은 신청인의 여동생(이하 ‘고인’ 이라 한다)이 자살한 원인이 부동산 매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며, 피고소인 1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, 피고소인 2를 사기, 사문서 위조, 위조 사문서 행사로 각각 고소하였다.
- 2) 신청인은 고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매 과정에 대해 직접 들은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고인의 휴대폰 문자 및 통화기록을 근거로 고소를 하였는데, 피고소인 1의 혐의부터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소인 1의 혐의가 입증되었기에 신속히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 종결하고, 피고소인 2의 사건을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분리하였다.
- 3) 피고소인 2는 편취한 사실이 없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었으며, 사문서 위조

및 위조 사문서 행사의 경우에도 피의사실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불송치 결정 하였다. 분리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하였는데, 끝내 제출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.

4) 이 민원 고소사건을 2021. 2. 8.에 최초 담당자인 장○○로부터 인계인수를 받았고, 김○○은 고소인 보충조서를 장정\* 대신 받아준 것에 불과하다. 따라서 담당자는 여러 차례 변경된 것이 아니라 1회 변경되었다.

5) 분리된 고소사건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연장선상에 있고, 신청인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별도로 수사 개시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통지하지 않았다.

마. 신청인은 분리된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받은 사실이 없는데도, 이 민원 경찰관은 2021. 9. 24. 문자로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, 심지어 2022. 2. 23. 경찰서에 방문하였을 때 확인해 보니 수사기록에 통지현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시하였다며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다. 신청인이 제시한 사진에 기록된 통지현황에는 “일시 2021. 9. 24., 대상자 권○○(신청인), 주요내용 ○○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서○○ 수사관입니다. 본 검 관련하여 진행중에 있으며, 자료 제출 여부 관련하여 추후 연락드리겠습니다.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, 031-899-03\*\*번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합니다.” 라고 기재되어 있다.

바. 한편, 우리 위원회 조사관이 2022. 2. 3.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이 민원 경찰관이 2021. 8. 10. 이 민원 고소사건에서 새로운 사건번호를 생성한 사실을 설명하였고, 이에 신청인은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

인지하였다.

#### 4. 판단

##### 가. 관계법령

###### 「경찰수사규칙」

제11조(수사 진행상황의 통지)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소인·고발인·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를 포함한다. 이하 “고소인등”이라 한다)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고소인등의 연락처를 모르거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연락처나 소재를 알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한다.

1. 신고·고소·고발·진정·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

2. 제1호에 따른 수사를 개시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난 날

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,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.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.

##### 나. 판단 내용

- 1) 먼저, 이 민원 고소사건의 접수일을 조작하였다는 신청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신청인이 조작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.

2) 다음으로,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 진행상황 및 결과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신청에 대해 살펴보면, 2021. 12. 28.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사실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수사결과 통지서를 발송 처리한 것이 확인된다. 그러나, 이 민원 경찰관이 분리된 고소사건의 수사개시일인 2021. 8. 10.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작성한 2021. 12. 28.까지 수사 개시 통보를 하지 않은 점과 매월 1회씩 총 4회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3회를 문자, 우편, 전화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신청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바, 「경찰수사규칙」 제11조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.

## 5. 결론

그러므로 이 민원 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을 시정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6조 제1항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시정을 권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2022년 3월 21일